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15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92	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 6. 20.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3)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04873	강명구의원 등 11인	2024. 10. 24.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 11. 29.)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3)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05170	정태호의원 등 15인	2024. 11. 1.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 11. 29.)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03)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08007	천준호의원 등 11인	2025. 2. 7.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2. 18.)	
				소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2212501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 8. 29.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11. 24.)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14418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 11. 20.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17421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6. 3. 12.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18668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 4. 28.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5. 11.)	
				소위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2220643	박홍배의원 등 17인	2026. 8. 19.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8. 3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5.)는 위 9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

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33조의2 신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선행매수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에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를 공제한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의무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34조제1항 단서)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해당 주식의 발행인,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해당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다.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등의 금지(안 제140조)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라.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응모된 경우에는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응모한 주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두 매수하며,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마. 의무공개매수외의 매수 방법으로 추가 매수하거나, 미이행, 절차위반 등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안 제1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위반 행위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안 제429조제2항, 제444조, 제445조 등)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의무공개매수 관련 제반 의무의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부과함.

4.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의무공개매수 가격의 산정기간에 대한 글로벌 사례, 의무공개매수 대상자의 인수부담,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5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행매수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말한다)를 공제한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매수주식수”라 한다)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해당 주식의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선행매수 또는 제1항제2호의 매수등으로 보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선행매수 또는 전환사채권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이하 “선행매수등”이라 한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 본문 중 “공개매수공고일”을 “공개매수공고일(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행매수등을 한 날을 말한다)”로, “주식등”을 “주식등(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41조 및 제174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를 “하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

장 가격, 공개매수자의 이전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행매수등(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말한다)을 한 다음 날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때(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3조의2에 따른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44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14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14의3.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5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34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하
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는 그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주권상장법
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①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5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행매수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말한다)를 공제한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매수주식수”라 한다)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해당 주식의 매수등(이하 “선</u>

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
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
계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가
장 많은 주주인 자가 그 주
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부여
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
득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선행매수 또는 제1항제2호의 매수등으로 보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의 주식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

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본인과 특별관
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
계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인 경
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
우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u>공개매수공고일</u>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u>주식등</u>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u>매수등"이라 한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u>공개매수공고일(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행매수등을 한 날을 말한다)</u>----- -----<u>주식등(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41조 및 제174조에서 같다)</u>----- -----. -----.
---	---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생략)

<신설>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신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생략)

<신설>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하
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 공개매수자의 이전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신 설>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행매수등(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말한다)을 한 다음 날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 설>

1. ~ 9. (생략)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
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1.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제1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같은 조 제1항, 제2
항 및 제4항-----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신 설>

③ ~ ⑥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략)

<신 설>

<신 설>

15. (생략)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

2. -----

-----때(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33조의2에 따른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14의3.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현행과 같음)

16. 제134조제1항 본문 -----

지 아니한 자 17.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u><신설></u> 20. ~ 48. (생략)	----- 17.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134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u>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0. ~ 48. (현행과 같음)
--	---